

E

이것이



P

프로이



R

리사이클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01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소개



생산자책임재활용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란?

“재활용의무생산자(제품·포장재 제조업자, 수입업자,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자)”에게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시행 2003.1.1.)

- 생산자책임원칙에 따라 재활용을 해야 하는 제품·포장재를 발생시킨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판매-소비-폐기-재활용**까지 재활용체계의 전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도모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사항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 출고·수입실적서 제출만 해당)

1.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제출기한 : **매년 4월 15일**
 - 제출대상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분담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음)
 - 제출방법 :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
 - 제출서류 : 전년도 EPR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또는 수입량 및 개당 무게 증빙서류 등**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2.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 납부)

-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당해 연도에 납부**
 - 분담금 : 재활용의무량(kg) × 분담금 단가(원)
 - 분담금 공제 방법 : ①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 ② 위탁하여 회수·재활용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

■ 재활용부과금(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발생)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 생산자에 부과하여 징수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미이행량(kg)* × 기준비용(원)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미이행가산률

* 재활용의무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실적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방법



1. EPR 대상 제품·포장재 종량·용량 산출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2. 작성기준

- 제조업자(국내 OEM 주문자 포함) : 국내 소비용으로 출고된 제품·포장재
- 수입업체(납세의무자) :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통관기준)의 제품·포장재

3. 제외대상

- ①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인정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관세환급신청서,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등
- ②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
- ③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
 - 증빙서류 : 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폐기제품목록 등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품목코드



구 분	기재 예시	품목 코드	출고 단위	구 분	기재 예시	품목 코드	출고 단위
포장재	종이팩	0110	kg	제품	유탄유	0710	ℓ (리터)
	유리병(뚜껑테일체형)	0210	kg		타이어	0610	kg
	유리병(뚜껑테분리형)	0220	kg		형광등	0910	개
	철캔(뚜껑일체형)	0310	kg		수은전지	0510	g
	철캔(뚜껑분리형)	0320	kg		산화은전지	0520	g
	알루미늄캔(뚜껑일체형)	0330	kg		니켈카드뮴전지	0530	g
	알루미늄캔(뚜껑분리형)	0340	kg		리튬전지	0540	g
	PET병-무색단일재질	0410	kg		망간전지·알칼리망간 전지	0550	g
	PET병-유색단일재질	0411	kg		니켈수소전지	0560	g
	PET병-복합재질	0412	kg		수산물 양식용 부자	1010	kg
	발포합성수지(PSP제외)	0420	kg		곤포사일리지용필름	1110	kg
	단일재질폴리스티렌페이퍼(PSP)	0430	kg		김발장	1210	kg
	단일복합재질 PVC	0440	kg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0460	kg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	0450	kg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0460	kg				
	전기기기류의 필름·시트형 포장재	0470	kg				
	유탄유 부동액 브레이크액의 용기류	0480	kg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비료사료포장재)	0490	kg				

※ 0460 코드는 필름구분 필수 입력
 예) 포장재로 사용된 경우 “포장재”
 제품인 경우 “(제품)에어캡” 등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1. 포장재

① 종이팩 ② 금속캔(철, 알루미늄) ③ 유리병 ④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2. 제품

① 전지류 ② 타이어 ③ 윤활유 ④ 형광등 ⑤ 수산물 양식용부자
⑥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⑦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⑧ 합성수지재질의 필름류 5종(PVC 제외)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



구 분	제조업자		수입업자	
	매출액	출고량	수입액	수입량
종이팩	10억원 미만	4톤 미만	3억원 미만	1톤 미만
유리병		10톤 미만		3톤 미만
금속캔 (알루미늄캔, 철캔)		4톤 미만		1톤 미만
합성수지류		4톤 미만		1톤 미만
발포합성수지		0.8톤 미만		0.3톤 미만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제품 5종 (PVC제외)		4톤 미만		1톤 미만

※ 재활용의무 면제 여부는 전년도 규모로 산정하며 제품군의 경우 면제 기준 없음(필름류 제품 5종 제외)
 ※ 제조업체는 출고량·매출액, 수입업체는 수입량·수입액 기준을 적용하며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재활용 의무가 있으면 출고·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 산정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받은 자
- 포장재의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상세내역



구 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포 장 재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용품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모든 제품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ex. 비닐, 트레이, 용기 등) ※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독물용기 제외(폐기물부담금 해당)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제 품	전 지 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 이 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 활 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수산물 양식용 부자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작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5종”이 추가됨(2020.1.1.)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2020년도 EPR 제도 주요 개정사항



구분	기존	개정	비고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	대상사업장 규모 규정	면제사업장 규모 규정	자원재활용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출고수입실적 제출대상	대상 사업장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 대상 입증 등)	
출고수입실적 미제출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8
EPR 대상 제품 확대	전자류 등 7개 제품군	필름류 제품 5종 추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제3의2호

헷갈리는 용어 정리



분담금 vs 부과금

- 분담금 :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 (분담금 납부 = 재활용의무이행)
- 부과금 :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

예) 분담금 납부 (O) → 재활용의무 이행 (O) → 재활용부과금 (X)
 분담금 납부 (X) → 재활용의무 이행 (X) → 재활용부과금 (O)

비대상 vs 규모 미만

- 비대상 업체 : EPR 대상 제품·포장재를 수입·제조(포장재를 이용한 판매 포함)하지 않는 업체
 ⇒ 재활용의무생산자 (X),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의무 (X), 분담금 (X)
- 규모 미만 업체 :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 재활용의무생산자 (O),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의무 (O), 분담금 (X)

의무생산자 vs OEM생산자

- 의무생산자 : EPR 대상 제품·포장재를 수입·제조(포장재를 이용한 판매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 OEM생산자 :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따라 타사 브랜드의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국내만 해당)
 ※ OEM주문자, 상표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 이행

유리병 뚜껑테 일체형 VS 분리형

- 뚜껑테 일체형 : 뚜껑테가 없거나 개봉 후 테가 유리병 목에 남지 않는 것
- 뚜껑테 분리형 : 뚜껑을 개봉하였을 때, 테가 유리병 목에 남는 것

유리병	
〈뚜껑테 일체형〉	〈뚜껑테 분리형〉
	

금속캔 뚜껑 일체형 VS 분리형

- 뚜껑 일체형 : 뚜껑을 반복해서 열고 닫도록 사용하게 설계된 경우, 뚜껑과 몸체가 분리되더라도 별도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원터치 분리형 뚜껑이라도 별도로 분리배출표시를 하여 분리수거가 가능한 경우)
- 뚜껑 분리형 : 뚜껑부에 손잡이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개봉 시 금속뚜껑과 몸체가 분리되어 열리는 경우

금속캔 (철캔/알루미늄캔)	
〈뚜껑 일체형〉	〈뚜껑 분리형〉
	

※ 금속캔 : 한국산업표준 포장용어에 따른 18L 이하의 금속재질 용기(18L 초과 드럼통은 신고제외 대상)



0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소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지속적인 생산·유통으로 폐기물 회수·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률 저하 및 재활용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3]



평가제도 개요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재질·구조 단위로 자체 평가 후, 평가결과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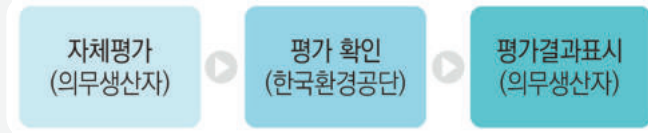
- 평가주체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평가기한 :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전**
- 평가대상 :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참고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의 제1호부터 제3호]
- 평가방법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평가**
(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 제출서류 : 해당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증빙서류(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육안판정결과서, 사진자료 등)**
※ 서식 등 참고자료 : EPR 홈페이지(www.iepr.or.kr)-고객마당-자료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을 통해 평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평가 결과 표시(어려움 등급은 의무 표기)



- 신청방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에 자체평가 결과와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해당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증빙서류 등**
- 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보완 통보 시 10일 이내 보완)
- 표시기한 : 6개월 이내(필요시 9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



* 단, 평가결과 표시 예외 포장재(「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제5조)는 제외

- 기타사항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¹⁾ 기록·보관
 -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²⁾ 제출(매년 4월 15일까지)
 - 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 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사용금지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개선 및 중단 명령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의무생산자에게 1년(연장 가능)의 범위 내에서 개선 명령 조치, 개성명령 미 이행시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 조치
- 제조·수입·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단 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10억원 이하)

• 사용금지 포장재(개선 대상)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	비고
PVC재질의 포장재 (폴리염화비닐리덴 포함)	PVC재질을 사용하여 접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를 포함
유색 PET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에 한함
열알칼리성 수용액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가 사용된 PET병	

※ 2019.12.25.부터 사용금지(별도 계도기간 없음)

• 사용금지 적용 예외 대상(사용가능)

개선 대상 적용 예외 (사용가능 제품·포장재)
•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한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포함)
•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참고: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제3조제2항

03

슬기로운 재활용 생활

폐기물부담금, EPR제도, 환경성보장제도
다 같은 제도 아닌가요?

1. 폐기물부담금이란?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대상 제품 : 살충제·유독물용기, 부동액, 검, 일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 환경성보장제도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 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 대상 제품 : 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50종)

[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Q&A 폐기물부담금? EPR제도? 환경성보장제도?

Q1 우리 회사는 부동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에 해당하나요?

- 🔍 귀사는 폐기물부담금과 EPR제도 두 곳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액은 폐기물부담금, 포장재인 부동액 용기는 EPR제도에 신고하면 됩니다.

Q2 우리 회사는 프린터기와 토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에 신고해야 하나요?

- 🔍 귀사는 폐기물부담금과 EPR제도, 환경성보장제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프린터”는 환경성보장제도에, 토너와 프린터기를 포장하고 있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는 EPR제도, 일체형을 이루어 판매되는 “토너”는 폐기물부담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제도에 관한 일부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

카카오톡 채널 및 챗봇 개설 안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카카오톡 채널이 생겼어요!

채널을 추가하고, 채널 게시판 및 챗봇을 통해
제도 소개,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안내 매뉴얼 등을 쉽게 확인하세요.





자원순환 제도별 고객 소통 창구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재활용의무생산자 출고·수입실적 : 02-3153-0570~7
재활용수탁자 회수·재활용 : 02-3153-0561, 0563~4, 0566, 0568
분리배출표시 : 02-3153-0578
- 폐기물 부담금 제도** | 제조업자 : 02-3153-0551, 0553~4
수입업자 : 02-3153-0541~5
- 환경성보장제도** | 전기전자제품 : 02-3153-0582, 0584, 0593~4
전기전자판매업 : 02-3153-0586~7
사전예방 : 02-3153-0585, 0589

※ 이 책자는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 제작 : 2020.11.

